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02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개 요	5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2. 현행법 도입 경과 및 개정안 입법취지	7
IV.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	8
1. 총칙(제1장,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8
2.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2장, 안 제6조부터 제19조까지)	9
가.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안 제6조)	9
나.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등(안 제15조 및 제16조)	12
다. 인·허가등의 의제(안 제17조)	16
라. 토지 등의 수용·사용(안 제18조)	21
3. 국토중심 중부내륙 성장거점 조성(제3장, 안 제20조부터 제57조까지)	23
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운영 등(안 제20조)	23
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 설치 등(안 제21조 및 제22조)	25
다.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안 제24조)	30

라.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특례(안 제25조)	32
마.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의 수변구역에서의 시설 설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안 제26조) ·	33
바. 댐용수 사용료 면제 및 우선 사용에 관한 특례(안 제27조)	35
사. 청남대 구역의 시설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안 제28조)	37
아. 호수진흥지구 지정 등(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39
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범사업에 관한 특례 등(안 제32조 및 제33조)	43
차. 「하천법」에 관한 특례 등(안 제34조)	45
카.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안 제38조)	56
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안 제39조)	57
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안 제40조)	59
하.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안 제41조 및 제42조)	61
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안 제43조 및 제44조)	65
너.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안 제45조 및 제46조)	70
더.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육성(안 제47조 및 제48조)	72
러.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안 제49조)	80
머. 바이오헬스산업의 진흥(안 제50조)	82
버. 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안 제51조)	83
서.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안 제52조)	84
어. 「농지법」에 관한 특례(안 제53조)	86
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등(안 제54조 및 제55조)	88
처. 교육훈련 및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안 제56조 및 제57조)	91
 4. 보칙 및 벌칙(제4장, 안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93
 5. 부 칙	 9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종배의원 등 21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9.
3. 회부연월일 : 2024. 9.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가·지방 연계 협력을 통한 국가발전 모델 창조 선도를 목표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요 조항들이 제외되었음.

중부내륙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어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각종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에게로의 권한이양 및 특례규정 등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6조)

나.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다. 국가 및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타 지역과의 발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2조).

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댐용수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댐용수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바. 환경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총유기탄소(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하천의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 지정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제34조부터 제36조).

Ⅲ. 개 요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중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은 본칙 4장 총 64개 규정 및 부칙 1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7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8조(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의 수립)	제8조(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의 수립)
제9조(산림관리대책의 수립)	제9조(산림관리대책의 수립)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제11조(발전종합계획 등의 심의·의결 등)	제11조(발전종합계획 등의 심의·의결 등)
제1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제1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제3장 사업의 시행 등	-
제13조(사업시행자)	제13조(사업시행자)
제14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4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신 설>	제15조(행위의 제한)
<신 설>	제16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인·허가등의 의제)	제17조(인·허가등의 의제)

<신 설>	제18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제16조(준공검사 등)	제19조(준공검사 등)
제4장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특례	제3장 국토중심 중부내륙 성장거점 조성
제17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운영 등)	제20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운영 등)
<신 설>	제21조(조세의 감면)
<신 설>	제2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 설치)
제18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제23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신 설>	제24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신 설>	제25조(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특례)
<신 설>	제26조(한강수계 및 금강수계의 수변구역에서의 시설 설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신 설>	제27조(댐용수 사용료 면제 및 우선 사용에 관한 특례)
<신 설>	제28조(청남대 구역의 시설설치 및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신 설>	제29조(호수진흥지구 지정)
<신 설>	제30조(호수진흥지구개발계획 수립)
<신 설>	제31조(호수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신 설>	제32조(한강수계 및 금강수계 통합물관리를 위한 수량 확보에 관한 특례)
<신 설>	제33조(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범사업에 관한 특례)
<신 설>	제34조(「하천법」에 관한 특례)
제19조(「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35조(「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신 설>	제36조(「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신 설>	제37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신 설>	제38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신 설>	제39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 설>	제41조(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신 설>	제42조(연구산업진흥단지 조성에 대한 특례)
<신 설>	제4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 설>	제4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신 설>	제45조(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 설>	제46조(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
<신 설>	제47조(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육성)
<신 설>	제48조(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신 설>	제49조(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신 설>	제50조(바이오헬스산업의 진흥)
<신 설>	제51조(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신 설>	제52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신 설>	제53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신 설>	제54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신 설>	제55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신 설>	제56조(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신 설>	제57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21조(자료 제출과 출입·검사)	제58조(자료 제출과 출입·검사)
제22조(감독)	제59조(감독)
제23조(청문)	제60조(청문)
제24조(권한의 위임)	제61조(권한의 위임)
제25조(벌칙)	제62조(벌칙)
제26조(양벌규정)	제63조(양벌규정)
제27조(과태료)	제64조(과태료)

<개정안의 주요내용>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음 (제18조)

(개정)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기금 설치(안 제22조), 조세 감면(안 제21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안 제24조) 등 재정 및 핵심 사업 지원 방안 보완

□ 중부내륙발전종합계획과 연동하는 특별법 체계 정비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인접 시·도간 연계·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제6조)

(개정) 관광산업 진흥, 댐 주변지역 활용과 정비, 사회간접자본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등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각호의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특별법 체계 정비

□ 지역 특성을 살린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등 특례 다각화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제17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는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제19조 및 제20조)

(개정) 지역 특성을 살려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유형을 다각화하여 맞춤형 특례를 부여하고, 지역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여 독창적 지역 특화발전 도모

2. 현행법 도입 경과 및 개정안 입법취지

현행법은 2023. 12. 26. 총 27개 조문으로 제정되었으며, 중부내륙연계 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24. 6. 27. 시행되었음.

중부내륙지역은 백두대간으로 인한 낮은 교통접근성, 충주댐과 대청댐 등을 활용한 용수공급으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특별종합대책 등 토지이용과 시설설치의 제한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대청댐, 괴산댐, 충주댐과 백두대간 주변에 위치한 충북 시·군의 지역낙후도가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방소멸 위험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부내륙지역의 지역특성과 환경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규정은 제외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¹⁾

이에 개정안은 중부내륙지역과 관련된 특례규정과 중부내륙지역에 대한 사무이양의 근거 등을 신설하려는 취지로, 중부내륙의 특색있는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적절한 특례와 필요한 발전시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1)충북 "중부내륙특별법 다시 손본다"…21대 국회 발의 목표, MBN, 2024. 1. 22.

IV.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

1. 총칙(제1장,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1장 총칙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안 제1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 등 법률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며(안 제2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 개발과 보전,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안 제3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하면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계획과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며(안 제4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국가의 시책 수립·추진 및 지원방안 마련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용·개발과 보전의 조화의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5조), 내용은 현행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동일함.

2.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2장, 안 제6조부터 제19조까지)

가.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인접 시·도 간 연계·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7. 도로·철도·공항·물류·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8. (생략) 9. 백두대간 저발전지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지역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지역발전도를 조사·분석하여 <u>선정된 지역</u>을 말한다) 및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 ----- ----- ----- ----- ----- ----- ----- ② 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7. 도로·철도·공항·물류·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8. (생략) 9. ----- ----- ----- -----저발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 ----- ----- 10. 내수면 발전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u><신설></u> <u>10. (생략)</u> ③ ~ ⑨ (생략) 제14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 ⑧ (생략) <u><신설></u>	<u>11.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등을 위한 문화균형발전에 관한 사항</u> <u>12. (현행 제10조와 같음)</u> ③ ~ ⑨ (현행 제3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14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 ⑧ (현행 제1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u>⑨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해당 사업승인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u>

현행법 제6조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인접 시·도 간 연계·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으로 ‘내수면 발전에 관한 사항’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등을 위한 문화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는데, 강과 호수가 많은 지역적 특성과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을 추진 중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 중 “도로·철도·공항·물류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개정안 제6조제7호)”에 대해,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²⁾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³⁾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⁴⁾ 「도로법」 제5조에 따라 법정계획인 국가도로망 구축계획⁵⁾, 「공항시설법」에 근거한 공항개발 종합계획,⁶⁾ 「물류정책기본법」에 근거한 국가물류기본계획⁷⁾ 및 「물류시설법」에 근거한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⁸⁾ 등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도로·철도·공항·물류에 관한 사항은 각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도시철도법」

제5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하 “도시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도로법」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공항시설법」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항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7)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나.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등(안 제15조 및 제16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행위의 제한)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신설>	제16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 그 지정 목적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과 제6조의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환경영향평가

현 행	개 정 안
	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5조, 제46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기관에는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⑤ 시·도지사는 친환경 개발 및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보며,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보고,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안 제16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각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며, 관련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이 기 이양된 강원자치도 및 전북자치도의 사례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강원자치도 및 전북자치도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라 함)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

9) 「강원특별법」

제64조(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사업(「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개발사업은 제외한다)
 2. 사업지역에 강원자치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기관에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도지사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66조(자연경관영향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의 방법 및 절차, 자연경관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제67조(기후변화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64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기후변화평가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함)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에 따라 법 시행 후 3년간 한시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항목의 추가·평가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일부 이양받았음.

참고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승인권(사업 주체, 경제성·기술성 검토)과 협의권(협의 주체, 환경성 검토)을 분리하여 국가 전체 차원에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의 지방이양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68조(「환경보건법」에 관한 특례) ① 제64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아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평가할 때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의에 관한 「환경보건법」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69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인·허가등의 의제(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제14조제8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결정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5. ~ 14. (생략)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6. ~ 20. (생략)	제17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 ----- ----- -----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5. ~ 14. (현행과 같음)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6. ~ 20.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2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22.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제14조 ----- ----- ----- -----
23.·34. (생략)	23.·34. (현행과 같음)
25.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25.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23. ~ 34. (생략)	23. ~ 34. (현행과 같음)
<신설>	3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신설>	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설>	37.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 등을 거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인·허가 의제의 경우 해당 인·허가를 둔 법령의 취지 및 효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인·허가 등의 의제는 하나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허가, 인가, 특허, 신고, 등록 등 관련되는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시행 시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각각 받도록 하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신속한 시행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음.¹⁰⁾

인·허가 등의 의제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개별 인·허가 제도는 해당 개별법의 취지에 따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규제 형식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기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10)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p.377.

[인·허가 의제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 의견	
국토 교통부	신중검토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이라 함)」 제86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할 경우 “지적확정측량” 방법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에 착수할 경우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적공부가 폐쇄될 예정임을 공시하기 위하여 사업의 착수·변경·완료의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임. 이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은 법률과 시행령, 행정규칙에 의거 31개 사업이 이미 정해져 있으며, 「중부내륙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 법에 의한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이 조문을 의제처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신중검토 필요
	신중검토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 중부내륙법상 사업시행자 정의(제13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사업시행자 정의와 다르며, 이에 사업계획수립 주체(조합, 신탁사 등)가 상이하여, 인허가의 의제가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당 문구 삭제 필요
	신중검토	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 현재 산업단지는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국토개발계획, 산업입지수급계획 등에 따라 조성 중이며,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산업입지법령에 근거한 추진이 필요하며, 타 법령 의제를 통한 산단개발은 부적합하여 “삭제” 필요
산업통상 자원부	수정의견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 <u>공장설립등의 승인(제13조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 시 사업시행자가 사용하기 위한 공장설립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경우만 해당한다)</u> - 사업시행계획에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부지를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할 경우에만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인·허가등의 의제’ 대상이 되므로, 「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26호와 같이 직접 공장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상 법 제13조제5호, 제6호의 사업자를 법 제11조제1항제21호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	신중검토	22.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6조에 따라 발전종합계획 협의 시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지정 협의를 하게 되는 바, 개정안 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사업 승인 시 협의 의제 조항은 불필요
해양수산부	신중검토	25.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실시계획 단계) 추진을 위해선 「어촌·어항법」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기본계획 단계)에 반영이 선행되어야 하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기본계획 단계인 어항개발계획 반영에 대한 내용은 없이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만을 의제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여건으로 어항개발계획 반영 없이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는 불가하므로 동 의제조항은 존재 의미가 없어 신중검토 필요 - 또한, 어항이라는 특수성과 어항시설의 적정 관리·운영을 고려하여 의제 허가 보다는 「어촌·어항법」에 따른 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범위는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으로써, 해당 지역에는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이 존재하지 않은 실정으로 해당 조항의 실효성 부족
	신중검토	3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 무분별한 마리나항만의 개발 제한과 마리나항만의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등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마리나항만구역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업승인권자)에게 사업시행계획을 승인 받거나 고시한 경우 이를 의제처리 하도록 한 것은 「마리나항만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에 맞지 않아 신중검토 필요

라. 토지 등의 수용·사용(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18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을 제14조제5항 및 8항에 따라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업무·보상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안 제18조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고시된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

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 제4조의2¹¹⁾는 「토지보상법」 제4조 또는 별표의 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바, 「토지보상법」의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토지 등의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의 토지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등 재산권 침해 소지가 높으므로 수용대상 사업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은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포괄적인 토지수용권 부여로 수용권이 광범위하게 행사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1) 「토지보상법」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국토중심 중부내륙 성장거점 조성(제3장, 안 제20조부터 제57조까지)

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운영 등(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u>제17조</u>(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함께 거쳐야 한다. <신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u>제20조</u>(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운영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호수진흥지구 2. 산림이용진흥지구 3. 첨단과학기술단지 4. 연구산업진흥단지 5. 투자진흥지구 6.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복합단지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현행	개정안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는 고시된 날부터 5년, 제14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 승인의 효력을 상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이용 및 보존사업의 시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과 고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협의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0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①호수진흥지구, ②산림이용진흥지구, ③첨단과학기술단지, ④연구산업진흥단지, ⑤투자진흥지구, ⑥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복합단지로 구분하고 있음.

이는 특례가 적용되는 지구를 주제에 따라 세분하여 지구별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효율적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산림이용진흥지구’의 경우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산림이용진흥지구에 대한 요건 및 지정·운영을 위한 절차가 미비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 설치 등(안 제21조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조세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연관산업기관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또는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현행	개정안
<신설>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 설치) ① 국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타 지역과의 발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이하“연계발전기금”이라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1조, 조세의 감면)

안 제21조는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연관산업기관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개별법상 조세 감면 근거가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감면 근거가 직접 규정¹²⁾

12)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 25. (생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되어야 하므로 개별법상 재량규정을 두는 것은 실질적인 조세 감면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이해관계자의 불필요한 기대 및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동일한 사유로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의 경우에도 조세 감면 관련 규정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음.

행정안전부는 개별법상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항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나 해당 규정 필요시 유사 입법례¹³⁾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관산업기관 등’은 제외하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입주하는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의 일부 지원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보험료액의 50%씩 부담하도록 하고,¹⁴⁾ 「고용보험 및 산

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조세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진흥지구·과학기술단지·자유무역지역의 투자가 또는 입주기업 등과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자 또는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등의 양도나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14)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를 곱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¹⁵⁾

개정안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해당 지구의 기업 및 근로자 유치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10인 미만,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규모, 보수규모, 재산규모, 종합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¹⁶⁾ 소득 관련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를 국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 제22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 설치)

제21조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타 지역과의 발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은 국가의 출연금으로 하고 있음.

중부내륙지역은 백두대간으로 인한 교통접근성 부재 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댐 건설과 국립공원 지정 등 국가 이익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출연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을 설치하여 발전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24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 시급성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핵심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핵심 사업 선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4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 시급성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핵심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인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⁷⁾

통상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17)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지침」 18)에 따라 9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원칙임.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등 비용 편익 분석 결과 등에 쟁점사항이 발생하거나, 부처간 이견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9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업 실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우선선정 및 면제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우선 선정’ 규정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형해화를 초래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18)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

1. 대상사업의 성격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 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수행기간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행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제34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때, 중앙관서의 장은 변경된 사업내용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을 경과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한다.

③ 시급한 조사수행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원칙적으로 6개월(철도부문 9개월)로 단축한다.(이하 "신속예타절차"라 한다.) 다만, 조사에 필요한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조사착수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1. 타법률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안전관리 및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
2.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근거가 있고, 재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
3. 위원회에서 신속예타절차 적용 대상사업으로 의결

라.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특례(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25조(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특례) ① 충청북도지사는 청주국제공항의 거점공항 육성을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청북도지사”로 본다.

개정안은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공항시설법」 19)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2023년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이 1997년 민간 개항 이후 최다인 369만 명으로 집계되는 등 이용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군 공항으로 인한 제약이 있어 특례를 통한 민간전용 활주로, 여객터미널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19) 「공항시설법」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또는 비행장을 개발하려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의 장애물(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로서 그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현행 공항개발사업은 중장기 계획 및 국가 전체의 항공수요 등을 기반으로 「공항시설법」 등에서 정한 절차²⁰⁾에 따라 추진 중이며, 사업비용 등 소요 재원은 모두 국가 및 공공기관(공항공사)이 부담하고 있고,

개정안과 같이 특정 공항(청주공항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변경만 지자체(충청북도 등)가 수행할 경우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공항개발의 체계성·효율성 및 상위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등의 저하가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마.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의 수변구역에서의 시설 설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26조(한강수계 및 금강수계의 수변구역에서의 시설 설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²¹⁾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허가를

20) (절차) 국토종합계획·국가기간망교통계획·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국토부) ➡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국토부) ➡ 사전타당성조사(국토부) ➡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 공항별 기본계획 수립·변경(국토부) ➡ 기본·실시설계(국토부) ➡ 준공(국토부)

현행	개정안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② 제1항에 따라 수변지역에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시설계획 등을 해당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의 중복적 규제로 인해 침체된 지역발전을 위해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의 수변구역에서 식품접객업과 숙박업을 허용하려는 것임.

[(충북) 수변구역 지정 면적]

(단위: km²)

총 계	한 강 (충주시)	금 강			
		소 계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204.27	20.56	183.71	26.53	128.32	28.86

2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지정 취지는 오염원 신규입지 제한을 통해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고 한강 및 금강수계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지역을 입지규제에서 제외시 타 지역의 완화 요구로 이어져 상수원 입지규제 근간 훼손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수원 입지규제 완화 영향이 해당 지자체의 범위를 벗어나 중부권 전체(대청호는 355만명의 식수원)에 있어 하류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논의·합의가 필요하고,²²⁾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해 개발사업을 위해 특례를 적용한 사례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바. 댐용수 사용료 면제 및 우선 사용에 관한 특례(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27조(댐용수 사용료 면제 및 우선 사용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도지사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댐용수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댐용수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22) 규제지역(상류)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하류지역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므로 구체적 개발사업에 대한 상·하류간 논의·합의 미이행시 갈등 유발 소지가 있음(환경부).

개정안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²³⁾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 댐용수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한강과 금강 유역의 수자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댐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환경서비스(수자원공급) 제공에 따른 대가를 해당 지역으로 환류함으로써 상수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의 보상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특정 지역의 사용료 면제는 댐용수 전국 동일요금제²⁴⁾ 운용 취지에 반하며, 용수 사용료 면제에 따른 댐사용권자의 수입 감소는 댐·수도시설의 개대체 투자 재원의 축소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물값 인상 요인 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3)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①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한 금액이나 제33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는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방법과 수납방법 및 수납기한 등을 정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전체 다목적댐 건설·운영·관리비용을 고려, 전국 동일 요금단가(52.7원/㎥) 적용 중

사. 청남대 구역의 시설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안 제28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청남대 구역의 시설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청남대 구역에서는 「수도법」 제7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의 시설설치 및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수도법」 제7조²⁵⁾ 등에도 불구하고, 청남대 구역의 효율적

25)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시험·분석·연구 기관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를 말한다),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법률 제1097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2년 1월 29일을 말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공고일 이전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그 유해화학물질이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활용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설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 및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으로서,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되는 행위의 허가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현행 「수도법」 제7조제4항 등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공작물)의 신·증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개정안에 따라 특정 구역(청남대 구역)에만 특례 조항을 두는 경우 지역 간 제도운영 상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정책 일관성 유지가 곤란해지며, 상수원 보호구역 내 시설설치 등 행위 허가 기준의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오염물질 부하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상·하류 지자체 의견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개별법령에 특례 조항을 두기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아. 호수진흥지구 지정 등(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현행	개정안
<신설>	제29조(호수진흥지구 지정)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호수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호수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상지역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 대상지역의 자연자원과 자연생태 및 경관이 호수관광을 추진하는 데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대상지역과 주변 자연환경 여건이 호수관광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발압력과 환경영향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민간투자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인구소멸 대응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출 것 5. 환경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6. 자연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7. 호수진흥지구에 관한 투자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호수진흥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호수진흥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방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30조(호수진흥지구개발계획 수립)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호수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호수진흥지구의 명칭·위치·면적 2. 호수진흥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호수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현 행	개 정 안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생태·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 안전·재해 대책 및 구조·구급 계획 8. 조성토지 등의 사용·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9.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0.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1.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1조(호수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① 호수진흥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수립·변경 및 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3.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4.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5.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호수진흥지구는 「산지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사도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안 제29조 및 제30조, 호수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개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도 하여금 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호수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호수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9조), 호수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0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강·호수 기반 관광지 방문수요가 증가함에 따라²⁶⁾ 수자원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 대두되고 있으며,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편익창출 기반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개정안은 한강·금강 유역별로 강·호수의 특화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호수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수자원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안 제31조, 호수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호수진흥지구를 지정·고시된 때에는 관광(단)지 지정,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허가의제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인허가의제 대상에 대해 이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임.

26) 청남대 72만 명, 의림지 61만 명, 청풍호 61만 명, 도담삼봉 286만 명 등 강·호수 기반 관광지 대규모 수요 창출('23년 기준, 충청북도)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 분	부처 의견		
제31조 호수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문화체육 관광부	수정 의견	○ 「관광진흥법」 제52조 개정에 따라 <u>인구감소지역의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광단지</u>는 <u>문체부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지정</u> 협의하여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므로 관련 지정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수정 필요 ○ 제31조제1항 본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행정기관의 장’으로 수정 필요
	환경부	신중 검토	○ (제5호 : 하천기본계획) <u>하천구역의 결정 및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은 국민의 안전 및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하천 치수방재 사업의 주요 사항이며, 하천관리청이 직접 수행해야 할 고유 권한이므로 삭제 필요</u>
		신중 검토	○ (제6호 : 오염총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u>수질 오염총량제는 한강수계 등 4대강 수계법에 따라 행정구역 단위(시·도)나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상·하류 수계에 일관하여 공통으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광역 차원의 검토기능이 필요</u> ○ <u>현행 제도상 오염총량관리 계획(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현재도 시·도 및 시·군에서 수립하고 있음. 다만,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하는 업무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u> ○ 상·하류 수계를 일관한 목표수질 관리라는 총량제 제도 취지, 오염총량관리 계획 승인에 대한 상하류 일관된 기준 적용 필요성, 상·하류 지자체간 갈등 사전예방, 타 특별법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u>현행 유지가 필요</u>
	산림청	신중 검토	○ 지역 특성에 맞게 산림을 활용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u>‘산림이용진흥지구’만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산지 관련 특례를 허용</u>하고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범사업에 관한 특례 등(안 제32조 및 제33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32조(한강수계 및 금강수계 통합물관리를 위한 수량 확보에 관한 특례) ① 중부내륙지역의 시·도 및 관할 시·군 및 자치구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포함된 지방하천, 소하천 등에 「물관리기본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전한 물순환과 수생태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하천유지유량 등 수량 확보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물관리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수량 확보에 필요한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시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제33조(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범사업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총유기탄소(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안 제33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환경과 개발을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계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지역에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총량을 할당·관리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에 ‘난분해성유기물질(TOC)’²⁷⁾을 확대하는 ‘총유기탄소(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낙동강 수계에서 실시 중인 시범사업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서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부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법적 근거는 「물환경보전법」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총유기탄소(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범사업에 관한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TOC 시범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모범에 두지 않고 특별법 내 특례로 두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7) “총유기탄소(TOC)”란 물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질에 포함된 탄소의 총량으로, 수질 오염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임.

총유기탄소는 물 속의 유기물질 양을 일반적으로 20~40%만 측정할 수 있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에 비해 90% 이상 측정할 수 있어 하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됨.

차. 「하천법」에 관한 특례 등(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34조(「하천법」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하천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의 지방하천의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 지정기준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포함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에 필요한 시설 ③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 제36조(「자연공원법」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포함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

현 행	개 정 안
	구에서는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바목,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도립공원·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7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 면적은 농업진흥지역 농지감소율, 영농여건, 농업진흥지역 비율 등을 고려하여 4천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②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해당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촉진지구 내의 농업진흥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안 제34조)

개정안은 「하천법」 제44조²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부내륙연계발

28) 「하천법」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지역의 시·도지사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 지방하천의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재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하천법 시행령」에 따른 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지정기준
보전지구	1. 하천의 <u>자연생태계 유지</u>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 2.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하여 <u>용수공급,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u> 하천구역 3. 특이한 경관·지형 또는 지질을 가진 하천구역 4. 다양한 하천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이 될 수 있는 하천구역 5. 중요하고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하천구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하천구역 외에 <u>하천관리청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u> 하천구역
복원지구	1. 보전지구 또는 보전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하천구역이 <u>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되어 자연·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는</u> 경우
친수지구	1. 직간접적인 <u>친수활동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거래행위를 하는</u> 하천구역 2. 전통적으로 <u>친수활동이 활발하게</u> 이루지고 있는 하천구역 3. 그 밖에 <u>하천관리청이 친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u> 하천구역

개정안은 시·도조례로 중부내륙연계지역 내 지방하천에 대한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지정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하천 이용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수요 등을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해당 특례규정을 마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중부내륙연계지역 내 보전지구 등의 지정 필요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환경부**는 「하천법」에 따른 보전지구 등은 하천공간의 활용방안, 하천의 안전성 및 복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지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시·도조례로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정할 경우 지구 간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지구로 편중될 우려가 있어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임.

(안 제35조)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²⁹⁾에 포함된 보전산지³⁰⁾에서의 행위제한에

29)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란 인접 시·도(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0)

관한 사항을 완화하도록 규정하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의 산림보호 구역³¹⁾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수목원 등에 필요한 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보전산지의 종류 및 행위제한 유형>

	유 형
보전산지의 종류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 및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

31) 「산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임업용산지 행위제한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공익용산지 행위제한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제1항제9호의 시설 중 봉안시설 설치 또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설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8. 그 밖에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현행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³²⁾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³³⁾ 내의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대상으로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특례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례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전체에 부여할 필요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³⁴⁾.

참고로, 환경부는 산림분야의 특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전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관련 지구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현행과 같이

3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포함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시설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에 필요한 시설
- ③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

33)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란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지구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34) 참고로, 현재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는 지정되지 않았으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은 대전광역시 동구·유성구·대덕구,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이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영월군, 충청북도 청주시·충주시·제천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금산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경상북도 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예천군이 해당됨.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안 제36조)

개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포함된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개축·재축,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한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자연공원법」 규정	조례 규정 사항
제18조제2항 제2호바목	-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증축·개축·재축하는 경우, 증축·개축·재축의 규모
18조제2항제3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 주거용 건축물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 및 시설의 규모 -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제18조제5항	-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 또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개축 및 재축 하는 경우 증축·개축 및 재축 규모

개정안과 같이 조례에서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의 건축물 증

축·개축·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자연공원의 개발 가능성 및 전국 자연공원의 통일적·체계적 관리 필요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환경부**는 조례로 자연공원지구에서의 허용행위 기준을 규정하면 지방자치단체 별로 행위기준이 달라져 국민들의 혼동을 가져오고 상대적으로 행위기준을 강하게 적용받은 지역의 불만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안 제37조)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274조³⁵⁾ 및 「강원특별법」 제50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4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농지법」 제34조제1항[농지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로 전용하기 위한 협의

조36)와 유사함.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토의 체계적 관리와 우량농지 보전에 악영향 끼칠 우려, 농지법 실효성 저해 우려, 식량자급률 저해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례 관계부처 의견]

구분	부처 의견		
제37조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 식품부	신중 검토	○ 농지의 비가역적인 특성* 때문에 규제를 완화할 경우 우량농지 감소 추세**를 가속화시킬 우려 * 농지가 공장부지 등으로 한번 전용되면 다시 농지상태로 복구 하는 것이 불가능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면적(천ha): ('14) 809 → ('18) 777 → ('22) 769 → ('23) 767 ○ 농업진흥지역은 식량자급률* 제고와 식량안보의 핵심지역으로 그 지정·해제는 법령으로 정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임 * 식량자급률 추이(%): ('17) 51.9 → ('18) 50.3 → ('19) 49.3 → ('20) 49.3 → ('21) 44.4 → ('22) 48.3 ○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는 강원 특별법*과 전북특별법**에서 테스트베드 형태로 운영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위임 여부 결정 필요 *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4천만제곱미터 이내(특례 존속 기간 3년, 평가 후 지속 여부 결정) **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한 농생명산업지구는 도지사에게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위임

만 해당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3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50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 제1항 및제31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 면적은 농업진흥지역 농지감소율, 영농여건, 농업진흥지역 비율 등을 고려하여 4천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 ② 「농지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③ 「농지법」 제30조 제4항및제31조 제1항·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촉진지구 내의 농업진흥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카.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안 제38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38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3.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개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청년·중장년 등의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중부내륙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한 중부내륙지역의 인구감

소 및 지방소멸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³⁷⁾는 인구감소지역의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대해 개정안과 유사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안 제39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39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3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일 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2.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3.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 인구감소지역 내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정착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강원 특별법」³⁸⁾은 개정안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³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도지사에게도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 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국가산업단지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지정·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이라는 전부개정법률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38)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에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안 제40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4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중부 내륙연계발전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은 용도지역⁴⁰⁾ 내 건폐율과 용적률⁴¹⁾의 최대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최대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⁴²⁾.

개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현행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⁴³⁾, 「제주특별법」⁴⁴⁾ 및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40)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국토계획법」 제2조제15호),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됨(동법 제36조제1항)

41)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 면적의 비율로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건축물에 의한 토지의 이용도를 나타내는 지표임(표준국어대사전).

42) 「국토계획법」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법」⁴⁵⁾ 등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대해서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전체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토지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한 토지 활용도 증대의 필요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검토할 필요가 있음.

43)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 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4) 「제주특별법」

제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② 제주자치도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및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편의시설·관광시설을 포함한다)의 결정·구조·설치의 기준 및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는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4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3(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②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2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하.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안 제41조 및 제42조)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41조(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전략기술을 영위하는 과학기술단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42조(연구산업진흥단지 조성에 대한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현 행	개 정 안
	및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도지사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산업진흥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산업진흥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제3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와 그 밖에 지정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중부내륙연계지역 내의 산업육성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참고로, 「제주특별법」⁴⁶⁾과 「강원특별법」⁴⁷⁾ 및 「동·서·남해안 및

46) 「제주특별법」

제161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내륙권 발전 특별법」 48)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해안권·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산업진흥법」 49)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연구산업진흥단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다만, 개발센터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에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47) 「강원특별법」

제33조(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⑤ 도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전략기술을 영위하는 과학기술단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같은 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학기술단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48)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4조(첨단과학기술단지) ① 시·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첨단주력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및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심의로 본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단지의 지정 및 조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다.

49) 「연구산업진흥법」

제9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산업진흥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산업진흥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지 지정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는 통상 산업단지는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통해 추진되는데, 개정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인·허가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연구산업진흥법」 및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⁵⁰⁾은 시·도지사의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신청 및 시·도지사 의견청취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해서만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제3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와 그 밖에 지정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0) 「연구산업진흥법」

제13조(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등)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하는 지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안 제43조 및 제44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4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4.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 지구는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4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제43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을 갖춘 지역을 중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거나 투자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중부내륙지역 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는 「제주특별법」, 「전북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동·서·남 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등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관련 유사 입법례]

법률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 7. 24.)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법률	내 용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162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3. 12. 26.)	제73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74조(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73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의 방법, 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2006. 9. 27.)	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광주광역시에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과 협의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법률	내 용
	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공고절차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가 투자유치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추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2. 12. 27.)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③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6(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5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법률	내 용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갱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2007. 12. 27.)	제2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주요 사업내용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시·도지사는 제25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⁵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법률에

5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의6(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5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 제43조 및 제 44조에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너.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안 제45조 및 제46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45조(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 지역 주력 특화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산업(「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말한다)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는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소재·부품·장비산업 복합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제46조(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연수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연수기관 내 부설기관으로 지역 특화

현	행	개 정 안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지역 주력 특화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산업⁵²⁾(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함)의 육성을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 국가산
 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특화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가 지역특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연수기관(연구소 포함)을 설치·운
 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전북특별법」⁵³⁾의 고령친화산업복
 합단지 지정에 대한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52) “소재·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의미하며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를 의미함(「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5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산업(「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이하
 “복합단지”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복합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복합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제35조(고령친화산업 전문교육연수기관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분야에 종
 사하는 자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연수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연수기관 내 부설기관으로 고령친화산업 분야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지역특화산업의 지원 필요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국가 지원의 적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면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⁵⁴⁾

더.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육성(안 제47조 및 제48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47조(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육성) ① 국가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도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가 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등(이하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집중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도는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5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복합단지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복합단지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3. 복합단지의 운영계획
4. 제36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 계획
6. 사업추진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 목표
7. 그 밖에 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1.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원 2. 혁신적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3.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 4. 그 밖에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등을 위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는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55)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신산업·기술 창업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① 국가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② 국가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는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개시한

현행	개정안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4항 각 호의 부담금 중 제2호, 제7호, 제15호 및 제16호를 제외한 부담금 2.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안 제47조,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육성)

개정안은 국가 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도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가 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집중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지역 내 저발전지역의 전략산업 및 유망산업 분야에서의 신산업·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⁵⁶⁾.

5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①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가 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신산업·기술 창업을 한 창업기업등(이하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집중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원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 신산업·기술 창업 인프라 구축 필요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신산업·기술 창업지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안 제48조, 부담금 등의 감면)

개정안은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57)에서 창업기업에 대해 “7

2. 혁신적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3.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
4. 그 밖에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정부는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신산업·기술 창업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①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제4항 각 호의 부담금 중 제2호, 제7호, 제15호 및 제16호를 제외한 부담금
2.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 ④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이 최초로 부과된 날부터 3년 동안 면제한다.
1.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따른 분담금
2.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

년”간 일정한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이 감면 기간을 연장하려는 부담금 현황]

구분	내용
§48①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 1.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48②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1.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담금 2.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 5.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불배출부과금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9.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0.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12.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1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만인 사업장만 해당한다)

6.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에 한정한다)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만 해당한다)
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2.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14.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15.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유망 신산업 및 기술 창업을 지원하고,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을 촉진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부담금, 점용료, 사용료 등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징수하므로 부담금 등의 감면은 관련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하하는 경우 변경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⁵⁸⁾ 부담금 등의 감면규정은 각 부담금등의 근거

58)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 원칙)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령에서 개별법의 입법 취지 및 관리·보전의 공익적 목적, 타 분야와의 형평성, 감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주특별법」 등은 각 근거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담금 감면 관련 유사 입법례]

법률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6조(부담금 등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및 하천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하천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관련 부처는 「농지법」 등 개별 법령의 감면대상 규정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부처에서는 개별법에 따른 감면대상에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담금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특례 관계부처 신중검토 의견]

구분	부처 의견	
부담금 등의 감면	기획재정부	- 감면특례 신설 시 타당성 검토를 위해 부담금법상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선행 필요, 실제 부담금 감면을 위해서는 <u>소관부처가 감면대상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개별법령을 개정하여야 함</u>
	농림축산식품부	- <u>특정 지역 소재</u>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시 <u>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초지의 효율적 보전을 위해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는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제도의 취지</u> 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
	산림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이미 공장설립 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해 7년 동안 대체산림 자원조성비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이에 추가하여 3년간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u>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음</u>
	국토교통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이미 공장설립 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해 <u>7년 동안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므로</u> 추가적인 특례 부여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러.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49조(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서비스산업⁵⁹⁾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 2. 서비스산업 활성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산업발전법」 제8조⁶⁰⁾와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융합 촉진법」 제3장⁶¹⁾에 관한 서비스산업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4조⁶²⁾에 근거하여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사용하는 사항 6.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59) “서비스업”이란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의해 타 경제주체나 경제객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무형의 경제재 생산활동을 의미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등 16개 산업대분류로 구분됨(통계청 홈페이지, 2024.11.10.검색)

60) 「산업발전법」

제8조(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지식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2.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활성화 지원
3. 새로운 지식서비스 사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4. 지식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5. 지식서비스산업 표준화 및 보급에 관한 지원
6. 지식서비스의 외주화(外注化) 촉진
7.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③ 정부는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로 하여금 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내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일부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시행 중이나,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서비스산업”의 개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안 제49조제2항은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시책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타 입법례⁶³⁾를 참고하여 법문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61)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적합성 인증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6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시·군·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6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전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7조(특화단지육성시책)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화단지의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특화단지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특화단지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단지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화단지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화단지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13. (생략)

「산업발전법」

제7조(신산업의 창출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전망
2. 신산업의 발전 방향
3. 기술·인력·입지·자원 등 기업활동 요소의 원활한 공급 방안

며. 바이오헬스산업의 진흥(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50조(바이오헬스산업의 진흥) ① 국가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바이오헬스산업의 인프라 조성 및 강화를 위한 지원 2.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성장 단계별 전주기 지원 3.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지원 4. 바이오헬스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5. 바이오헬스산업의 신기술 개발 지원 6. 바이오헬스산업의 국제교류·협력 지원 7.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개정안은 국가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로 하여금 바이오헬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심사에 있어서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의 적정성, 첨단 바이오는 12대 국가전략기술⁶⁴⁾ 중 하나로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될 예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64)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 포함),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또한, 안 제50조제2항은 바이오헬스산업 진흥 시책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이 잘 드러나도록 유사 입법례⁶⁵⁾를 참고하여 법문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버. 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안 제51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51조(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66)에 따른 중소기업 판로거점확보 지원을 위한 유통망 구축 등 사업

6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이차전지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이차전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6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판로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의 해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해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수행에 관한 중소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전북특별법」 제84조⁶⁷⁾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서.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안 제52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52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⁶⁸⁾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발급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1. 첨단과학기술단지 2. 연구산업진흥단지 3. 투자진흥지구 4.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③ 중소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67) 「전북특별법」

제84조(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한정한다)과 같은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소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가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⁶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외국인재를 유치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려는 것임.

[참고] 유사 입법례

법률	내 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11. 4. 4. 개정)	제24조의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0 1. 29. 개정)	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2023. 4. 25. 제정)	제3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2. 8. 4. 제정)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기술의 개발사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68) 「출입국관리법」

제8조(사증) ① 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2024. 1. 16. 제정)	제30조(우수 해외인재의 입국 및 체류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첨단산업과 관련된 우수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민 절차의 완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3. 12. 26.)	제63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농생명지구 / 2. 복합단지 / 3. 문화산업진흥지구 / 4. 산악관광진흥지구 ② 제1항의 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지가 지정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지닌다.

어. 「농지법」에 관한 특례(안 제53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53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가 아닌 경우에도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②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관한 그 밖에 사항은 「농지법」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농지법」에서는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조성한 토지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 일시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⁶⁹⁾

개정안은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조성한 토지가 아닌 경우에도 농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 일시사용허가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유휴농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통해 농지에 일정기간 동안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풍력발전설비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할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전용허가를 통해 설치를 검토하고 있어 「농지법」에 대한 특례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9)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5. (생략)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등(안 제54조 및 제55조)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54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이 설립은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도교육감 또는 시·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시·도지사”로

현 행	개 정 안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부령”은 “시·도조례”로 본다. ⑧ 제1항에 따라 설립한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5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에 소재하는 국립·공립·사립의 초·중등학교는 시·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사람은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자율학교의 교원과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受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경제자유구역에 교육 관계 법률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의 국제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70)에 따라 경제

7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어 법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 ②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의 자격, 외국교육기관의 승인조건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국가는 국민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하려는 경우 외국거주요건 등을 이유로 입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 ⑦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4조의4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 ⑧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 및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⑨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 ⑩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처. 교육훈련 및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안 제56조 및 제57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56조(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시·도 및 관할구역의 시·군·자치구에 속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5급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교육감 소속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적용한다.
<신설>	제57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안 제56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71)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71)「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교육훈련기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시·도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과 시·도 관할구역의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 시·군·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도의 경우 해당 시·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 해당 시·도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과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 시·군·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른 시·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지방공무원(5급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나,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만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음.

개정안은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도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5급 이상 지방공무원 현원, 교육 과정 개설 여부, 교육훈련을 통한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교류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57조) 개정안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 학교로 전학하는 사례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강원특별법」 제46조⁷²⁾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72) 「강원특별법」

제46조(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강원자치도 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 시장·군수는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촌유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4. 보칙 및 벌칙(제4장, 안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4장 보칙 및 벌칙에서는 사업승인권자의 자료 제출과 출입, 검사(안 제58조), 감독(안 제59조), 승인 취소 시 청문절차(안 제60조), 권한의 위임(안 제61조) 등 보칙 규정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벌칙 규정(안 제62조),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안 제64조)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현행 법률에서 추가로 개정된 사항은 없음.

5. 부 칙

부 칙 안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부칙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첫째, 시행일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각종 특례 및 지원규정을 신설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다수 두고 있는데, 하위규정의 제정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법 상의 일부 부칙규정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개정

안과 같은 ‘전부개정법률안’은 입법에 반영될 경우 종전 법률에 따른 부칙 규정들의 효력이 상실되는 바⁷³⁾, 전부개정안의 입법화 후에도 해당 부칙 규정의 효력을 유지시키려면 전부개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의 경우에는 법률 제19842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의 논의경과 및 시점에 따라 반영이 필요한 부칙 규정의 범위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부칙 제2조에서는 법률의 유효기간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별도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반영이 필요한 현행 부칙 규정]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시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다.

73) [대법원 판례] 법률의 개정 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헌법재판소 판례] 입법자의 실수 기타의 이유로 이 사건 부칙 조항이 이 사건 전문개정법에 반영되지 못한 이상, 위 전문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전문개정법률의 일반적 효력에 의하여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중략) 당사자가 공평에 반하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여 이미 실효된 법률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과세근거의 창설을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이 맡고 있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23 결정).

문 의 처
02)6788-5336